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건강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	-----

제출년월 : 2024년 10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금액 수정(안 제2조 관련 별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금액을 명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2. ~ 2024. 9. 11.(20일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출 제외 대상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금액란 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small>(제2조제2항 관련)</small>					수수료 및 진료비 <small>(제2조제2항 관련)</small>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진단서 및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1진단서 및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나.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나.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다.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다.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라.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마.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마.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사.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사.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아.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아.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자. 결핵진단서 또는 확인서	1통	1,500원			자. 결핵진단서 또는 확인서	1통	1,500원	
	차. 의뢰기록(X-선 필름) 사본발급 <small>(1인제1인제)</small>	1장	3,100원			차. 의뢰기록(X-선 필름) 사본발급 <small>(1인제1인제)</small>	1장	3,100원	
	카. 기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	1통	300원			카. 기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	1통	300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금액은 3,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금액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 성 자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